



제 414 호

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

- 기관명 : (주)진씨커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0길 26, 1202~1204호
- 기관장 성명 : 예 성 혁
- 신고유형
 1.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
 2.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검사
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23년 2월 1일

질병관리청

